

17개 시·도 모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 자립지원 관련 성명서 공유 및 논의

- “장애인 본인 의사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강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오후 4시에 황승현 장애인정책 국장 주재로 17개 시·도 회의를 개최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를 공유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서*를 공유하였다.

*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과정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동 상황이 다른 지방의회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등 내용의 성명서 발표(6.21.)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탈시설에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탈시설 지원조례를 폐지하면서, '24.7.15.에 개정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존 탈시설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을 통합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022~2025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30개 지자체에서 158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및 서비스 연계*를 완료하였고, 2026년부터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급여(생계·주거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등), 재산관리서비스 등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은 현재까지 16개 시·도에서 278명의 동료 지원가가 참여 희망자 발굴, 자조 모임 운영, 대상자 사례관리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에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서 원문
 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요
 3.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개요
 4. 회의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경일 (044-202-3280)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준호 (044-202-3181)
		담당자	사무관	정서영 (044-202-3183)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탈시설화 정책 및 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1. 위원회는 2024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가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이 당사국에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위한 중요한 조레인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즉각적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원회가 받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위원회는 다른 지방의회도 동일한 접근방식을 따를 수 있는 점을 우려함.
2. 위원회는 또한 지방 당국이 시설화 유지를 옹호하는 조직과 정치인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지적장애인을 향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언론 매체에 공개 발언을 하였다는 위원회가 받은 신뢰할 만한 정보에 경악함. 위원회는 이러한 점에서 2023년 7월 30일 서울시장의 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포함.
3.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에 따라 지방 수준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모든 당국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자 함.
4. 위원회는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모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제19조(이 규정은 지방 당국을 포함하여 모든 당국이 시설화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의무화함)의 구속적인 성격을 상기하고자 함.

5. 장애인권리협약에 설립된 권위있는 기관인 위원회는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5, 긴급 상황을 포함하여 탈시설화에 관한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와 제19조에 따른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음.
6.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이행할 의무에는 서울시의회가 계획한 것과 같은 역행적 조치를 채택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된다는 점을 지방 당국을 포함한 당사국의 모든 당국에 상기함. 시설화는 결코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나 “선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7. 위원회는 지방 당국을 포함한 당사국의 모든 당국에 협약 제14조와 제19조를 완전히 이행하고, 모든 장애인, 특히 시설화의 생존자들,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의미 있는 협의와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탈시설화에 관한 모든 이니셔티브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함. 지방 당국은 탈시설화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기존 탈시설화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삼가야 함.
8. 위원회는 또한 “b) 여전히 거주 환경에 있는 장애가 있는 성인 및 아동의 탈시설화 과정을 위한 탈시설화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 2022년 대한민국의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의 제42단락을 상기함.
9.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2022년 최종견해와 이 성명을 모든 지방 당국,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같이 퇴행적 조치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당국에 더 광범위하게 배포할 것을 요청함.

2024년 6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ole of local authori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1. The Committee expresses concerns, about credible information that has received, indicating that on 17 June 2024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passed the “Bill to abolish the ordinance for deinstitutionalization support”, which may result in the immediate repeal of the Seoul Ordinance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 important ordinance for deinstitutionalization in the State party. It is concerned that other provincial councils could follow the same approach.
2. The Committee is also appalled by credible information received indicating that local authorities, echoing the call of organizations and politicians advocating for the maintenance of institutions, have made public statements in media outlets portray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un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using derogatory terminology against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Committee is deeply disturbed by the statements made by the Seoul Mayor on 30 July 2023, in this sense.
3. The Committee would like to recall that,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Convention, all the authorities of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including at the local level are bound to resp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ve the duti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se rights.
4. The Committee would also like to recall the binding character of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prohibits without exceptions the deprivation of liberty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which oblige all authorities,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o develop services in the community, away from institutions.

5. The Committee, which is the authoritative body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 has clarified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4 and 19 of the Convention, in it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the General Comment No 5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nd its 2022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6. The Committee recalls all authorities of the State party,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hat the duti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Convention, include the duty not to adopt retrogressive measures, as the one planned by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nstitutionalization must never be considered a form of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a “choice”.

7. The Committee calls all authorities of the State party,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o fully implement articles 14 and 19 of the Convention, moving forward in all initiatives on deinstitutionalization, with the meaningful consultation and active involvemen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survivor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Local authorities should refrain from taking measures contrary to deinstitutionalization or repealing existing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or ordinances.

8. The Committee also recalls paragraph 42 of the 2022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periodic reports of Republic of Korea, calling the State party: “b)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for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those adul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still in a residential setting and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community-based services aimed at enabling persons to live independently and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9. The Committee also requests the State party to ensure broader dissemination of the 2022 Concluding Observations and this statement to all local authorities, and particular those that appear to be in the process of adopting regressive actions as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Geneva, Switzerland, 21 June 2024

□ **사업목표**

-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26년)을 위한 ①자립 효과 분석·평가, ②장애 특성별 지원모형 마련, ③지원 대상 규모 추계 등

□ **주요내용**

- (사업대상)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광역7, 기초 23) 관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재가장애인

- 시설장애인과 함께,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을 조기 발굴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강화

* 보호자의 장기 부재(사망, 질병 등),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 대기 등

- (사업예산) ('22) 22억원 → ('23) 48억원 → ('24) 60억원 (국비 기준)

- (자립현황) 158명(시설 127명, 재가 31명 / 발달장애인 127명 / 7월 현재)

- (주택) 257호(국토부(LH), 지방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 7월 현재)

- (사업내용)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거, 공적서비스 통합 연계*

*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급여(생계·주거급여), 장애인일자리,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센터, 건강검진 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 재산관리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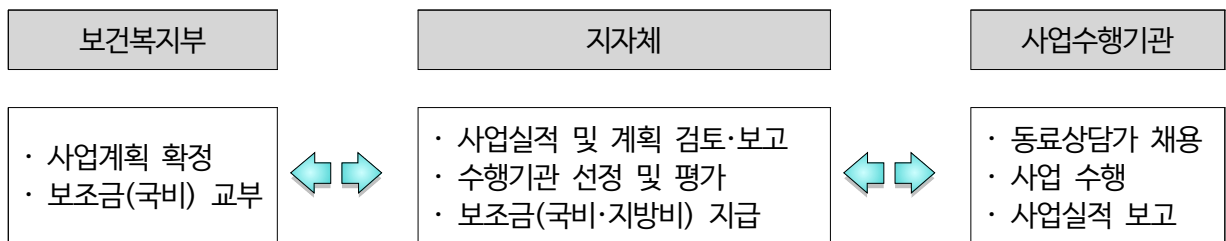
- (사업기간) '22~'25년(4년간 총 600명 자립 목표) ※ '26년 본사업 전환

< 연차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

1년차 (2022년) '도입기'	2~3년차 (2023~2024년) '추진기'	3~4년차 (2024~2025년) '본사업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공모 및 전달체계 조성 ▶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연계 ▶ 시범사업 지침 마련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모형 마련 연구(연차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공모 및 전달체계 조성 ▶ 시범사업 고도화 * 추진과정 평가, 참여지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공모 및 전달체계 조성 ▶ 시범사업 평가, 근거 법령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증장애인 당사자간 동료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 강화
- (사업내용) 사업수행기관(자립생활지원센터, 복지관, 단체 등) 에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를 채용하여 다른 중증장애인(참여자) 지원*
 - * 참여자 발굴, 서비스(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제공,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연계, 사후관리
- (지원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진행, 보조율 40%)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8,000명(동료지원가 400명)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수행기관 (지자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운영비: 월 60시간 근무기준 92만원(동료상담가 1명 기준) ○ 성과수당: 월 10회 이상 동료 상담 및 사회자원 연계 등 실적이 우수한 경우 동료상담가에 1인당 10만원 성과수당 지급
사업관리자 (수행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자 지원금: 월 50만원 (95개소)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관리자수당을 전담인력 인건비로 전환가능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수당: 1회 5,000원(최대 15회)

□ 회의 개요

- 일시 : '24. 7. 25.(목), 16:00~18:00
- 참석방법 : 영상회의
- 참석대상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정책과장, ▲ 시·도 복지국장, ▲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 주요 논의내용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서('24.6.21.) 주요 내용 안내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추진현황 점검
 - 지자체 건의사항·의견수렴

□ 진행 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6:00~16:05 (5분)	• 인사말씀	장애인정책국장
16:05~16:30 (25분)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서 주요 내용 안내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및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사업 추진현황 점검	보건복지부
16:30~17:30 (60분)	• 지자체별 추진상황 발표	해당 지자체
17:30~18:00 (30분)	• 지자체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지자체